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15 선고 2020가단5385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67939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15 선고 2020가단538570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, 최정윤, 이원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

변론종결 2021. 7. 21.

판결선고 2021. 9. 15.

주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9. 4. 10.자 7,000,000원, 2019. 6. 7.자 1,000,000원, 2019. 10. 10.자 13,620,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1,6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중소기업은행은 2012. 3. 23. D 합명회사에 220,000,000원을 대여하였는데, C은 265,000,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D 합명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0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위 법원은 2017. 5. 26. ‘C은 D 합명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,642,087원 및 그 중 72,412,699원에 대하여 2016. 8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7. 7. 14. 확정되었다.

다.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9. 4. 10. 7,000,000원, 2019. 6. 7. 1,000,000원, 2019. 10. 10. 13,62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라 한다)을 각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7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, C은 위 송금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

원고에게 21,620,000원(= 7,000,000원 + 1,000,000원 + 13,62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2019. 4. 10.자 7,000,000원 및 2019. 6. 7.자 1,000,000원에 관한 부분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부친인 C이 주식회사 F에 변제해야 할 돈이 31,484,580원이 있었는데, 이를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자신의 돈 16,000,000원을 C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입금받은 7,000,000원을 합하여 우선 23,000,000원을 위 회사에 변제하게 된 것일 뿐이고, 이후 C으로부터 입금받은 1,000,000원은 자신이 C에게 빌려준 위 16,000,000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.

2) 살피건대,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2019. 10. 10.자 13,620,000원에 관한 부분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19. 10. 10. C의 명의로 피고에게 입금된 13,620,000원은 C의 돈이 아니라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금을 C이 대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이고, 당시 입금자명을 특정하지 않아 입금자인 C의 이름이 피고의 계좌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정